

2006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 
신청요강

2005. 10.

한국학술진흥재단  
(인력교류팀)

## 대학교수해외방문 개선사항

구분	2005년도	2006년도	비고
지원방향	가.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, 기간별 차별화 지원 나. 일반연구와 병행하여 중점 연구분야 발굴 지원 다.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 지원 및 지역별 특화 전략	가. 해외방문연구의 내실화 나.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 지원 및 지역별 특화 전략	
연구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문, 자연 차별화</li> <li>○ 인문</li> <li>- 1년 : 60%내외</li> <li>- 6개월 : 40%내외</li> <li>○ 자연 : 6개월 원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문, 자연 동일</li> <li>- 1년 : 60%내외</li> <li>- 6개월 : 40%내외</li> </ul>	
지역별 배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주 : 유럽 : 기타 = 5:3:2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미주(미국, 캐나다) 50% 이내로 제한</li> <li>○ 타지역 배분을 없음</li> </ul>	
중점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연구와 달리 하반기 별도 시행</li> <li>○ 연구분야와 Top - Down주제 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없음</li> </ul>	
연구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국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개시일 지정, 보고서 제출기간 정례화</li> </ul>	
게재의무 학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문</li> <li>- A&amp;HCI, SSCI급</li> <li>- 등재(후보)</li> <li>- 저서</li> <li>○ 자연 : 국외 SCI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문 : 전년 동일</li> <li>○ 자연 : 국내·외 SCI, SCIE급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시 게재예정학술지 3종류 지정, 타 학술지에 게재 시 평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게재예정학술지 지정 없음</li> </ul>	

# 차 례

I.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.....	1
1. 사업목적 .....	1
2. 지원방향 .....	1
II. 사업내용 .....	1
1. 지원분야 및 대상 .....	1
2. 지원규모 및 기간 .....	1
3. 지원배분원칙 .....	2
III. 신청 .....	2
1. 신청자격 .....	2
2. 신청기간 .....	2
3. 신청방법 .....	2
4. 온라인신청절차 .....	3
5.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 제한 .....	5
IV. 심사 및 선정 .....	6
1. 심사절차 .....	6
2. 심사방법 및 내용 .....	6
3. 선정취소 .....	7
V. 연구비 지급 및 관리 .....	7
1. 연구비 지급 .....	7
2. 연구비 관리 .....	7
VI. 연구과제수행 .....	8
1. 출국 .....	8
2. 연구개시일 .....	8
3. 연구기간 .....	8
4. 연구계획변경 .....	9
5. 일시귀국 .....	9
IV. 보고서 제출 및 평가 .....	9
1. 연구기간 중 각종 보고서 제출.....	9
2.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.....	10
V. 간접연구비지원 .....	12
※ 별첨 - 심사항목 및 배점 .....	13
※ 연구계획서, FAQ	

## I.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

### 1. 사업목적

- 대학교수의 해외방문연구지원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, 국내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지역연구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및 연구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함

### 2. 지원방향

#### 가. 해외방문연구의 내실화

- 방문연구의 '타당성'에 주안점을 두어 실질적 필요성에 의한 지원
- 국제적 학술지 게재를 권장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 및 국제적 확산 도모

#### 나.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 지양 및 지역별 특화 전략

- 지역별 점유비율 설정하여 특정국가 편중 지양
- 특수지역에 대한 체재비 등 인센티브 부여

## II. 사업내용

### 1. 지원분야 및 대상

가. 지원분야 : 전 학문분야

나. 지원대상 : 소속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 전임교원

※ 편람, 사전편찬, 교재개발, 번역, 전람회,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지원규모 및 기간

#### 가. 지원규모

- 6개월 연구 : 1,500만원
- 1년 연구 : 2,500만원

나. 지원국가 : 전 지역

※ 특수지역 방문연구는 체재비(500만원 이내) 별도 지원함

- 특수지역 : 아프리카, 전쟁유발 지역, 분쟁지역, 연구 희소지역 등

다. 지원기간 : 6개월 또는 1년

3. 지원배분원칙

가. 지역별 배분비율 : 북미(미국, 캐나다)50% 이내로 제한

나. 분야별 배분비율 : 인문사회(50%), 자연(50%)

다. 기간별 배분비율 : 1년(60%), 6개월(40%)

Ⅲ. 신청

1. 신청자격 : 소속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 전임교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

■ 2001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, 국제 학술지, A&HCI급·SSCI급·SCI급(SCI 및 SCIE 등) 등의 국제학술지게재논문, 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 등의 연구 실적이

- 인문·사회·예술·체육계열 : 2편 이상인 연구자
- 자연계열 : 3편 이상인 연구자

※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,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

※ 단, 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또는 A&HCI급·SSCI급·SCI급(SCI 및 SCIE등)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(자유양식)를 온라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

2. 신청기간 : 2005. 11. 9(수) ~ 11. 18(금) 18:00까지

※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, 신청마감일(시간) 이후에는 접속이 되지 않아,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없음

3. 신청방법 : 학술연구자정보 입력 및 수정 ⇒ 재단 홈페이지 현재공모중  
인사업 클릭 ⇒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'신청' ⇒ 로  
그인 ⇒ 연구지원 메뉴 중 '연구지원신청' ⇒ 대학교수해외방  
문연구지원사업 '신청' ⇒ 온라인 입력 및 파일탑재 ⇒ 증빙  
서류 접수

#### 4. 온라인 신청 절차

##### 가. 온라인 신청 전

- 1) 국내 소속대학(교)을 통해 장기해외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함
- 2) 해외방문연구기관의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(e-mail 가능) 등을 입수함
- 3) 재단 홈페이지 「학술연구자등록」에서 본인의 정보(연구업적 등)를 입력,  
수정하여야 함 (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. 반영을  
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함)
- 4) 온라인 신청시 연구계획서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 
신청 전에 hwp 또는 Ms-word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  
(※양식 1 참조)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

##### 나. 온라인 신청

- 1)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사항(기본사항, 대표업적) 입력  
※ 대표업적은 “Ⅲ-1. 신청자격”에 해당하는 논문을 인문·사회·  
예술·체육 계열은 2편, 자연계열은 3편만 선택하여야 함
- 2) 연구계획서(연구업적요약문 포함) 파일 탑재
- 3) 증빙서류(해외방문연구기관의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(e-mail 가능)) 접수  
가) 접수방법 :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이용하여 탑재함
  - PDF 파일로 저장하여 탑재
  - 전화기가 있는 팩스(02-3460-5678) 이용

##### 나) 주의사항

- PDF 파일로 탑재하면 증빙서류 접수번호가 별도로 뜨지 않으며,  
증빙서류 파일 탑재 후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면 모든 신청 접수가  
완료됨

- 팩스를 이용할 땐, 온라인 신청 완료후 부여받은 증빙서류 접수번호 (13자리)를 가지고 팩스에서 전송함

#### 다) 팩스 이용 방법

- ① 증빙서류를 한꺼번에 팩스기에 올려놓고 팩스번호(02- 3460-5678) 입력
- ② 안내멘트에 따라 온라인 신청시 부여받은 증빙서류 접수번호(13 자리) 및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함
- ③ 전송결과는 My-KRF 증빙서류보기에서 확인 가능함

⇒ 재전송시 기 전송한 내용은 삭제되고 새로 전송한 내용이 저장됨

#### 4) 접수번호는 파일탑재 후에만 볼 수 있으며, 접수번호 확인이 안 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임

※ 신청기간 내에 수정은 가능하며, 수정 후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만 온라인 신청이 완료됨

※ 과제번호는 신청마감 2주일 후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각 연구자의 My KRF 화면해서 확인할 수 있음

※ 온라인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신청기간 초기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

※ 온라인 신청기한내 연구계획서를 미탑재한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

#### 다. 온라인 신청 후

##### 1) 연구자

-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(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) 1부를 출력하여 소속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함

##### 2) 연구비 중앙관리부서

- 신청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신청 입력 내용(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) 1부를 제출 받고 확인함
-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**2005. 11. 21(월) ~ 22(화) 18:00까지**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승인함. 승인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 과제로 인정하지 않음

- 해당 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(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)  
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

## 5.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 제한

### 가. 연구비 신청 제한
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-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(단,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)
- 동 사업 기 수혜자로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해외방문기간이 중복되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(BK21사업 포함)

### 나. 연구 참여 제한

-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,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
-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. 12.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



-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. 1. 1.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 정책개발 연구과제 및 재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과 과학재단 이관사업 중 2004년도에 선정된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, 선도과학자육성지원, 우수여성과학자도약연구지원,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,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지원사업의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
- 신청이후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
- 신청이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 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
- ※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(BK)21사업 참여자(지역대학육성분야사업 제외)는 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
- ※ 기 수혜받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하여야만 방문연구 수행이 가능함

## IV. 심사 및 선정

### 1. 심사절차

단계별	심사구분	심 사 내 용	비 고
1 단계	요건심사	정보시스템에 의한 확인 검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	재단
2 단계	전공심사	연구계획서, 증빙서류 및 연구업적 심사	전공심사단
3 단계	종합심사	최종선정과제 확정	종합심사단

### 2. 심사방법 및 내용

#### 가. 제 1 단계 심사 (요건심사)

- 심사방법 :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
- 심사내용 :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 여부 등

## 나. 제 2 단계 심사 (전공심사)

- 심사방법 : 패널심사  
※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 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
- 심사내용 : 연구계획서, 증빙서류 및 연구업적  
※ 지역 및 연구기간에 대한 분리(Track)심사를 실시함
- 심사항목 및 배점 : 6개 항목 100점 (※ 별첨 참조)

## 다. 제 3 단계 심사(종합심사)

- 심사주관 : 종합심사위원회
- 심사내용 : 전공심사결과 검토 및 지원과제 선정
- 심사원칙 : 심사점수 우선순위와 지역별, 분야별 및 기간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

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

## 3. 선정취소

- 타 기관으로부터 동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고 신고된 자
- 연구계획서 등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연구자
- 선정된 후 2006. 12. 31까지 출국하지 않은 연구자 (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연기 가능)

## V. 연구비 지급 및 관리

### 1. 연구비 지급

가. 지급방법 : 연구자의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

나. 지급시기 : 출국일 2개월 전에 연구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구비 지급

### 2. 연구비 관리

가. 연구비는 소속 기관을 통해 지급받아 해외방문 연구비로 사용함

나. 연구자가 방문연구기간 중 연구를 중단하고 귀국하거나 일시 또는 조기

귀국한 경우, 소속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비를 회수·반납하여야 함

- (1) 방문연구 중단 :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함
- (2) 일시 및 조기귀국 : 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, 이를 초과한 경우 기 지급된 연구비를 일할 계산하여 회수 조치함

다.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

-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
-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- 허위사실,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
-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
-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하였을 때
- 기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(연구계획서 포함)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

## VI. 연구과제 수행

1. 출국 : 2006. 1. 1부터 12. 31까지 출국을 원칙으로 함
2. 연구개시일 : 연구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, 이 사항은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과 연동함
  - 1, 2월 출국자 : 3월 1일(2006. 1. 1일 이전 출국자 포함)
  - 3, 4, 5월 출국자 : 6월 1일
  - 6, 7, 8월 출국자 : 9월 1일
  - 9, 10, 11월 출국자 : 12월 1일
  - 12월 출국자 : 2007년 3월 1일
3. 연구기간 : 6개월 또는 1년
  - 실제 연구기간 : 출국일로부터 기산함

- 보고서 제출 관련 연구기간 지정 : 지정된 연구개시일로부터 기산함

개시일 연구기간	3/1	6/1	9/1	12/1	2007/3/1
6개월	06/03/01 - 06/08/31	06/06/01 - 06/11/30	06/09/01 - 07/02/28	06/12/01 - 07/05/30	07/03/01 - 07/08/31
1년	06/03/01 - 07/02/28	06/06/01 - 07/05/31	06/09/01 - 07/08/31	06/12/01 - 07/11/30	07/03/01 - 08/02/28

#### 4. 연구계획 변경 : 연구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

- ※ 단, 당초 연구계획서와 동일하나 연구수행 도중(또는 이전) 불가피한 경우 연구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함(방문연구국가변경은 불가)

#### 5. 일시귀국 : 실제 연구기간으로 산정함

- 연구자는 실제 연구기간 중 임의로 연구를 중단하거나 일시귀국 할 수 없음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(1년 방문 연구자는 30일, 6개월 방문연구자는 15일)내에서 귀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자는 사전에 “일시귀국 사유서”(자유형식)를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
- 일시 귀국할 경우, 제반 경비는 연구자 본인이 부담함

## VII. 보고서 제출 및 평가

### 1. 연구기간 중 각종 보고서 제출

#### 가. 도착보고서 : 다음 기한 내에 제출함

- 1, 2월 출국자 : 3월(2006. 1. 1 이전 출국자 포함)
- 3, 4, 5월 출국자 : 6월
- 6, 7, 8월 출국자 : 9월
- 9, 10, 11월 출국자 : 12월
- 12월 출국자 : 2007. 3월

#### 나. 중간보고서 : 6개월 연구자는 면제, 1년 연구자는 다음 기한 내에 제출함

- 1, 2월 출국자 : 7월(2006. 1. 1 이전 출국자 포함)

- 3, 4, 5월 출국자 : 10월
- 6, 7, 8월 출국자 : 2007. 1월
- 9, 10, 11월 출국자 : 2007. 4월
- 12월 출국자 : 2007. 7월

다. 귀국보고서 : 실제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제출

## 2.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

### 가. 결과보고서 제출

1) 제출시기 : 다음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함

개시일 연구기간	3월	6월	9월	12월	2006. 3월
6개월	07/02/28	07/05/31	07/08/31	07/11/30	08/02/28
1년	07/08/31	07/11/30	08/02/28	08/05/31	08/08/31

2) 제출방법 : 온라인 제출

3) 제출자료

가) 온라인 입력

- 연구결과 개요보고서
- 연구요약문(국·영문)

※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

※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, 음성자료,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

나) 파일탑재

- 연구결과보고서(자유형식, 원문파일 탑재)

4)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

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'결과보고서'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

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는 물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

## 나. 연구결과발표물(게재논문 또는 저서) 제출

### 1)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

연구결과는 아래 제시된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해야 함

인문·사회·예술·체육계열	자연계열
-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-국제적 수준(A&HCI, SSCI급) 학술지 -전문학술저서	-국내·외의 국제적 수준(SCI&SCIE급) 학술지

### 2)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시기 :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

※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발표물은 인정하지 아니함

### 3)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

- 국문표기 : “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(교육인적자원부)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KRF-2006-013-과제번호).”
- 영문표기 : "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by the Korean Government (MOEHRD) (KRF-2006-013-과제번호)"

### 4) 연구결과발표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

- 연구결과를 국내·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 C, D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지원을 일정기간(C급 3년, D급 5년) 제한함

#### 다. 연구결과 사후 관리

-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
  -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(Full-text service) 실시
  - 연구현황, 통계 등의 제공
- 「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」과 「기술이전촉진법」에 의해 국공립대학 소속 교수의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은 '산학협력단' 또는 '기술이전전담조직'의 소유로 함
- 사립대학 소속 연구자에 의해 취득한 산업재산권도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이 소유함
-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※ 단,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주관기관이 다를 경우, 연구주관기관이 상기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.

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자격 박탈

#### 라. 연구성과 Follow-up 시스템

-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(논문, 저서, 보고서, 특허, 기술, 발명, 세계인명사전 등재, 언론보도, 인력양성 실적 등)을 게재하여야 함

### VIII. 간접연구비 지원

- 동 사업은 간접연구비 지원대상사업이 아니므로 별도 지원하지 않음

문의처

(137-17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 
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부 인력교류팀  
Tel (02)3460-5626 E-mail : chochma@krf.or.kr  
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f.or.kr>)

<별첨>

【심사항목 및 배점】

심사항목	측정지표	심 사 내 용
타당성 (35)	해외방문연구의 타당성 및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반드시 해당국가(기관)에서 수행해야 하는가</li> <li>○ 해당국가 counterpart와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가능하며, 필요한가</li> <li>○ 해당기관의 각종 기자재 사용이 가능하며, 필요한가</li> <li>○ 연구기간이 적절한가</li> </ul>
독창성 (20)	연구주제의 독창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금까지 연구(시도)되지 않았던 주제인가</li> <li>○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</li> <li>○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</li> </ul>
	연구방법의 독창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</li> <li>○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(도구)을 시도하는가</li> <li>○ 새로운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가</li> </ul>
학문발전 공헌도 (20)	학문적 가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술적 측면에서 해외방문연구가 필요한 분야·주제인가</li> <li>○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</li> <li>○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</li> </ul>
	학문의 균형발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국가(지역)의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</li> <li>○ 해당 학문분야가 희귀하거나 소외되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</li> </ul>
	학문의 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국가(기관)에 국내 연구성과 확산이 가능하며, 필요한가</li> <li>○ 연구결과가 국내의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가</li> <li>○ 연구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</li> </ul>
연구 내용 및 방법 (10)	연구내용의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내용 범위가 적절한가</li> <li>○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</li> <li>○ 포함된 내용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</li> </ul>
	연구방법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</li> <li>○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</li> <li>○ 자료분석(실험 또는 이론계산) 및 결과해석 방법은 적절한가</li> </ul>
	실행계획의 구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방문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</li> <li>○ 자료수집, 분석, 해석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</li> </ul>
선행연구 (5)	선행연구의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 되었는가</li> </ul>
	인용 및 참고문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</li> </ul>
연구역량 (10)	연구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</li> </ul>
	연구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방문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요건(언어 구사 능력 등)이 충족되는가</li> <li>○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</li> <li>○ 대표논문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</li> </ul>



<양식 #1> ☞ 이 부분부터 온라인 탑재

# 연구 계획서

(2006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)

연구과제명	국 문	※ 과제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		
	영 문			
연구기간	· 1년 ( )	방문국가		
	· 6개월 ( )	특수지역 여부	특수( ) 일반( )	
연구기관명	1.	확정여부	확정( ) 잠정( )	
	2.		확정( ) 잠정( )	
	3.		확정( ) 잠정( )	
출국예정일				

※ 방문국가는 1개국으로 한정하되, 방문기관은 1~3개 기관을 접촉하여 방문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최종 선택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.

※ 출국일은 가능한 실제 출국예정 월, 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, **2006. 12. 31.**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함을 유념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# 2006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

연구과제명	국 문	
	영 문	

## I. 연구계획

※ 이 내용은 참고 후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.

※ 연구계획은 “심사항목 및 측정지표”를 참조하시어 해외방문연구의 목적·필요성, 내용 및 연구방법, 학문·사회발전에의 기여, 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하되 총 15쪽 이내(참고문헌 목록 포함)로 국문으로 작성하십시오. (방문연구 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 등 증빙서류는 15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

## II. 연구수행계획

### 연구추진계획

년 월 일	연구수행내용	비고

# 연 구 업 적 요 약 문

온라인 신청시  
선택한  
연구업적 제목

업적 구분

저서( )   역서( )   학술지( )   외국특허( )

연구 참여자수

1명 ( )   2명 ( )   3명 ( )   4명 ( )   5명 이상 ( )

초록(abstract) 또는 요약문

(특허의 경우 출원일,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)

※ 온라인 신청시 선택할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십시오.

##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 신청관련 FAQ

### ① 2005년도 사업과 크게 달라진 점은?

- 지역별 지원배분 : 2005년도에는 미주, 유럽, 기타 3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쿼터(5:3:2)대로 선정했으나 2006년도에는 미주(미국, 캐나다) 지역을 선정과제의 50% 이내로 제한하고, 기타지역은 공동 경쟁합니다.  
↳ 미주지역은 경쟁률이 더 치열하며, 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짐
- 자연계열 연구기간 : 자연계열도 인문사회와 마찬가지로 6개월, 1년 연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- 방문연구의 타당성 중요 : 국내에서 충분히 연구가 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지역에서 연구해야할 타당성을 충분히 개진해야 선정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- 보고서 제출기한의 정례화 :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정례화 되었습니다. 본인의 출국일을 확인하시어 각종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### ② 특수지역이란 무엇이며, 특수지역 신청시 별도의 체재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?

- 특수지역이란 지금까지 연구가 잘 이뤄지지 않은 연구회소지역을 가리키며, 아프리카 등 오지, 전쟁유발지역, 분쟁지역 등 연구 착수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을 일컫습니다.
- 특수지역 여부를 신청할 때는 특수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근거를 연구계획서 상에서 설명해야하며, 선정되면 별도의 체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.

### ③ 신청자격에 '소속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 전임교원'이라고 나와 있는데, 학교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이 필요한가요?

- 해외방문연구를 신청하기에 앞서 소속대학교에 자격여부를 문의하셔야 하며, 별도의 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연구자의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소속기관의 확인기간이 있습니다. 그 때 학교측(연구비중앙관리부서)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.

### ④ 지원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

-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의 지원비는 연구비 개념입니다. 해외방문연구에

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체재비, 항공료, 자료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연구비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.

**⑤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이 있다면?**

-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'학술연구자정보란'에 지금까지의 실적을 갱신하셔야 하며, 신청기간에는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니, 미리 미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
-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연구자의 My KRF화면에서 확인하실 때 '필수등록여부'에 '아니오'라고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.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온라인 수정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수정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꼭 다시 눌러주셔야 합니다.
- 증빙서류 접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. 팩스사용이 편리하신 분은 전화기가 달려 있는 팩스를 이용하시고, PDF파일로 탑재하는 것이 편하신 분은 연구계획서를 탑재하시는 방법과 같이 증빙서류도 탑재하시면 됩니다. PDF파일로 탑재하셨을 경우, 증빙서류 접수번호가 따로 발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전산상에 문제점은 사업 담당자(02-3460-5626, chochma@krf.or.kr) 외에도 전산담당자(02-3460-5544, mok0905@krf.or.kr)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**⑥ 2006년 1월 1일 이전 출국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**

- 기타 신청자격요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, 2006. 3. 1부터 연구가 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만일 재단의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, 반드시 그 사업을 완료한 후 수행 가능하므로,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가 연구개시일이 될 것입니다.

**⑦ 방문연구기관을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, 국가가 다양해도 관계 없나요?**

- 방문연구기관을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문연구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관을 고루 선택해 최적의 기관을 확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. 북미주(미국, 캐나다)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배분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. 북미주 지역 내, 기타 지역 내에서는 여러 개의 연구기관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.

- ⑧ 협동연구과제를 신청했습니다. 아직 선정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며, 만약 과제가 선정된다면 2006년 11월 30일까지가 연구기간입니다. 이 사업에 신청할 수는 있나요?
-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단 협동연구과제가 선정된다면 그 과제를 수행하셔야 합니다.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시고자 한다면, 출국일을 협동연구과제가 끝나는 2006년 11월 30일 이후로 잡으셔야 합니다.
- ⑨ 출국일로부터 1년동안 방문연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, 지정된 연구기간은 실제 연구기간과 다릅니다. 그때까지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건가요?
- 연구개시일 지정으로 인해 설정된 연구기간은 보고서 제출만 관련됩니다. 실제 연구기간은 출국일로부터 6개월, 1년으로 생각하시고 체류하시면 됩니다.
  - 일시 귀국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 초과에 따른 연구비 환수도 실제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.
  - 그러나 전산 상에 연구기간은 지정된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, 1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⑩ 현재 적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 월급이 나오면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?
- 소속기관의 월급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. 그러나 해외방문연구 성격을 지니는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하셔야 합니다.
- ⑪ 저는 1년 연구를 예정하고 있지만, 재단에는 6개월 연구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. 재단이 정한 연구기간 내에 연구를 끝내고 반드시 귀국해야하나요? 연구계획 연장도 가능한가요?
- 6개월 연구자에 한해, 6개월 연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 단, 연장에 따른 경비는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. 공식적인 연구기간의 연장으로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.
  - 1년 연구자도 연구기간 종료 후에 해외방문국에 얼마 동안 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보고서 제출은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
- ⑫ 선정가능인원은 몇 명입니까?
- 대략 100명 이상(10 ~ 20명 가량 추가선정 가능)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신청현

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⑬ 저는 연구교수(겸임교수, 시간강사 등)입니다.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은 소속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가 가능한 전임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. 재단에 문의하기 전에 소속학교에 방문연구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주시요.

⑭ 증빙서류는 원문으로 제출하나요?

증빙서류를 제출하실 때 내용이 길다면, 해당언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. 번역문은 공증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